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Funds

朴 東 雲\*

Park, Dong Un

### — 目 次 —

- I. 서 론
- II. 기금의 성격과 운용내용
- III. 남북한 토영금방안과 통일비용의 마련
- IV. 통일비용의 기금화 방안
- V. 결 론

### I. 서 론

김일성 사망 후 3년 여가 지난 현재 북한이 당면해 오고 있는 여건들을 감안할 때, 통일이 독일에서와 같이 갑자기 밀어닥칠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알맞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脫北者 관리기금'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sup>1)</sup> 그동안 전문가들이 추산해 온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여서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때 남한은 통일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통일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온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통일비용의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이 중 제도의 정비는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주제가 아니므로

\* 本 研究所 研究員, 商經大學 經濟·貿易學部 教授

1) 「東亞日報」, 1996. 7. 13, 1면.

## 產業研究

필자는 논의를 통일비용의 마련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통일비용의 마련이란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필자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되는데<sup>2)</sup> 정부의 경제활동에서는 궁극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돈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이 매년 까다로운 과정을 걸쳐서 운용되는 것과는 달리 기금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은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예산제도를 개관하고, 기금의 성격과 운용내용을 검토한 다음, 통일비용의 기금화를 논의하려는 데 있다.

이 글은 본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정부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기금의 성격과 운용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이어 III장에서는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비용의 마련을 살펴본 후 IV장에서는 통일비용의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일기금의 설치를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 II. 기금의 성격과 운용내용

여기에서는 먼저 정부의 예산제도를 개관한 다음 기금의 성격과 운용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예산이란 흔히 넓은 의미의 정부나 좁은 의미의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글에서는 정부의 포괄범위를 주로 중앙정부에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란 용어는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 1. 정부의 예산제도

국민경제는 크게 보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와 공공단체가 포함된 공공부문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이와같은 재정의 포괄범위는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넓은 의미의 정부는 공공부문을,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부는 일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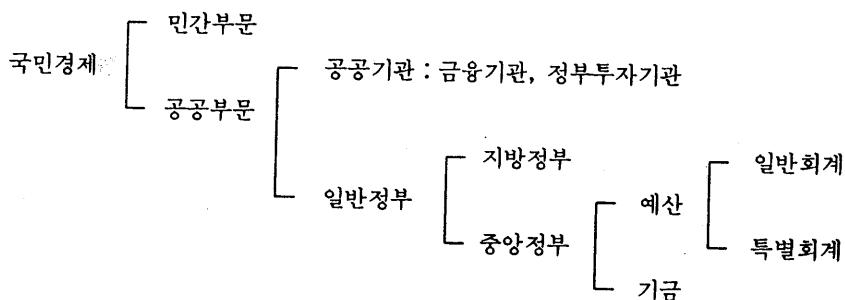
2) 李俊求, 『財政學』, 茶山出版社, 1994, p. 39.

## 统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부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정부의 예산제도에 관한 논의가 중심과제의 하나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정부라는 용어는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보아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은 매년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으며 기금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에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흔히 일반회계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국세, 관세 등 보통의 재정수입을 세입으로하여 국방, 치안, 교육, 공공사업, 사회보장 등 국가로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세출로 하고 있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란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1〉 공공부문의 재정체계



특별회계의 종류(〈표 3〉참조)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①정부기업에 대한 수지를 별도로 계리하기 위한 철도, 통신, 양곡, 조달 등 4개의 기업특별회계 ② 정부가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용자특별회계 ③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18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현재 특별회계는 모두 23개에 이른다.

일반회계와 23개의 특별회계 외에도 중앙정부는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특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

## 產業研究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정의한다면,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sup>3)</sup>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5월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금은 39개(미조성 4개), 기타기금은 37개로 모두 76개에 이른다.<sup>4)</sup>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公共性的의 크기에 따라 公共基金과 其他基金으로 구분되는데 공공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며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기금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 포함되고 있다. 공공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점을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나타내 보기로 한다(〈표 2〉 참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sup>5)</sup>의 포괄범위를 나타내면(표 3)과 같다.

### 2. 기금의 성격<sup>6)</sup>

이제 기금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금의 성격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구분체계,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과 확정, 기금의 운용계획의 집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 (1) 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구분체계

정부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회계연도 單年度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 기간의 운영 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각종 출연금, 부담금수입, 운용수익, 장기성 부채인 외부차입금 또는 채

3) 재정경제원, 『'96 基金白書』, 1996. 5, p. 5.

4) 전계서, pp. 25~27.

5) 통합재정수지란 공공부문에서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공공부문의 재정 활동과 관련된 수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財政經濟院, 『韓國統合財政收支』, 1995. 10, pp. 11~27을 참조하면 된다.

6)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財政經濟院, 『'96 基金白書』, 1996. 5.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권발행자금 등 수입재원별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투·융자금의 회수액과 단기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2〉 기금과 예산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모든 국가의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보유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시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가 섞여 있음	• 부담금, 출연금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 사업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확정 · 집행	• 정부가 예산안편성권을 가지며 국화가심의 · 확정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왼쪽과 같음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심의 및 대통령승인으로 확정됨. • 집행과정에서는 합법적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이 보장됨.
•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왼쪽과 같음

자료 : 財政經濟院, 『'96 基金白書』, 1996. 5, P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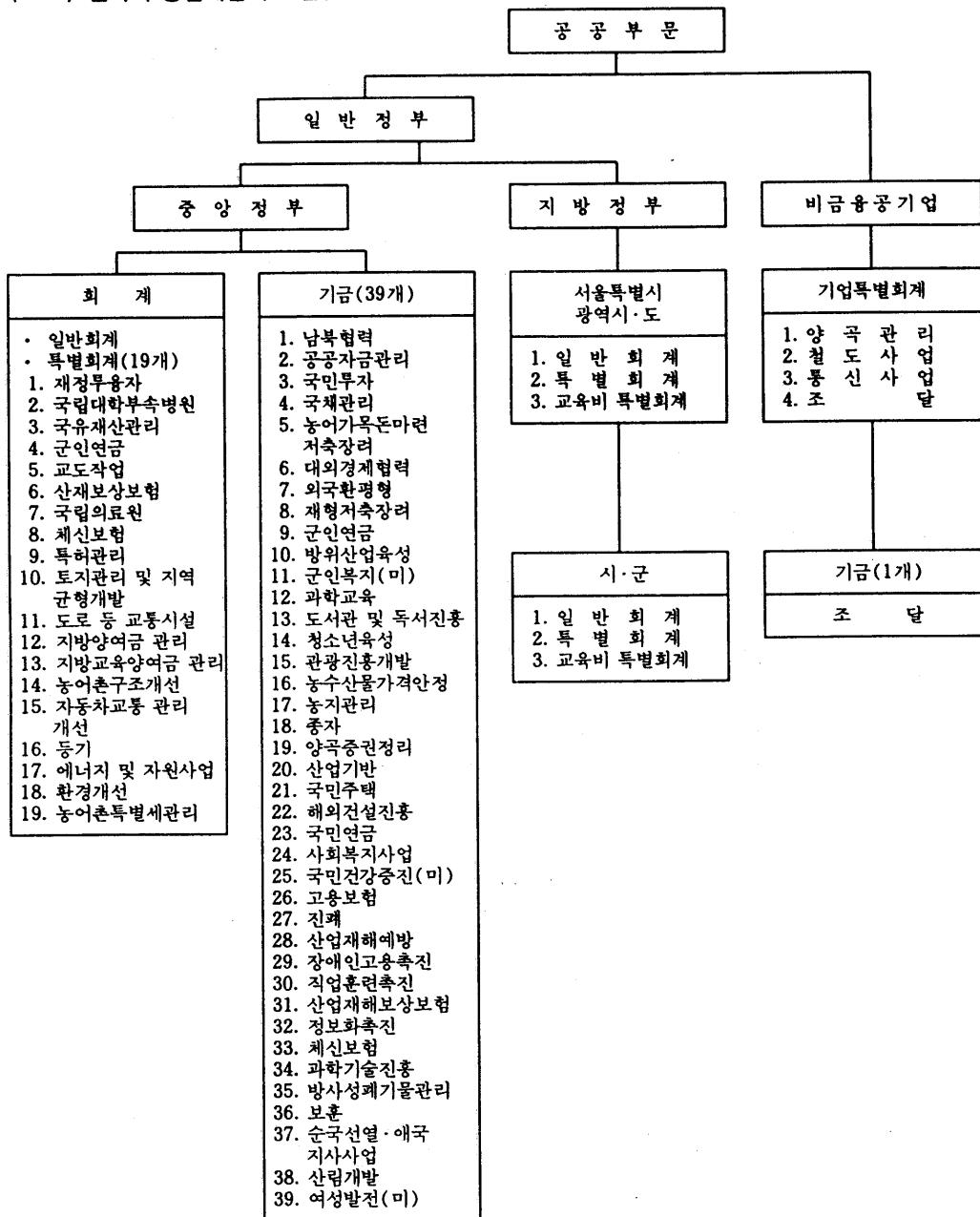
기금의 운용은 1년 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나는데, 수입은 연간 기금총조성액, 전년도 이월금, 단기차입금, 투·융자금의 회수액, 예탁자금의 인출 등 의 과목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연간 기금사용액, 회수가능한 투·융자금, 예탁금, 비소모성 자산에의 투자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 (2) 자율적 · 탄력적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확정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기금과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기타 기금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

產業研究

〈표 3〉 한국의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주 : 1) 지방정부예산은 예산편성의 시차로 인하여 통합예산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음.

2) 1995년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학 부속병원 특별회계'와 '산재보상보험 특별회계'는 폐지하였음.

3)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공공기금을 나타낸 것으로 『'96 基金白書』자료를 인용한 것임.

## 统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을 얻어 확정되고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타기금은 공단, 공사등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다음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얻으면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다. 이렇듯 기금의 운용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달리 자율적·탄력적으로 수립되고 확정된다.

### (3) 자율적·탄력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기금은 정부예산의 주재원인 조세와는 달리 재원징수기준이 개별기금법의 시행령·시행 규칙에 의거하므로 징수가 자율적·탄력적이고 지출에서도 예산과는 달리 신축적이다.

기금운용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이나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기금의 경우, 수입은 국고계정에 계상된 후 운용을 위해 바로 지출되어 제2금융권 등에 예치되고 있다.

## 3. 기금의 분류

통일비용의 기금화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여기에서는 기금의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 (1)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의 크기에 따른 분류

기금은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된다.

① 공공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그렇지 않는 기금 중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기금

### ② 기타기금 :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금

공공기금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며 국회에 보고된다.

### (2)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기금은 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예 : 외무부장관)이면 '직접관리기금', 중앙관서장 외의 자(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면 '간접관리기금'으로 분류된다.

### (3)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된다.

① 사업 및 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 (예 : 양곡증권정리기금, 직업훈련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투자기금 등)

## 產業研究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본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 (4)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분류

기금은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 : 국민주택기금, 국민투자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②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 : 산림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 (5)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기금은 관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군인연금기금, 과학교육기금 등)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기금(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 4. 기금의 조성재원

각 기금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원별로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수익 등이다.

### (1) 정부출연금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출연하고 있다. 정부출연의 근거는 개별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기금에 대한 지원여부는 기금을 관掌하는 각 부처의 개별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 (2) 민간임의출연금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 규정을 두고 있다. 출연형태는 국민성금, 관련단체기부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다. 그러나 민간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연 실적이 있는 공공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과학교육기금 등이며 기타기금은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 (3) 부담금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부과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불특정한 경

## 统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우와 특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附加모금, 과징금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 흥기금, 국민체육기금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부담하는 매출부 가금, 강제출연금(축산발전기금) 등이 있다.

### (4) 외부차입금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 등이 있다. 공공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운용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채권의 소화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증권단, 보험단에 의한 인수, 일반매출 또는 첨가소화(국민주택채권) 방법이 있다.

### (5) 기금운용수익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 등이 있다.

### (6)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주로 공기업기금이나 응자, 판매사업 등 유상적 급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영업순수익, 판매수익 등이 그 예이다.

### (7) 기타수입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전입이나 기타 잡수입 등이 있다.

## 5. 기금 현황(1996년)

한국의 기금은 1960년에 설치된 군인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0년에 3개, 1970년에 13개, 1980년에 45개, 1990년에 98개, 1993년에 114개로 절정에 이른 후 1993년 이래 유사기금 및 장기간 미조성기금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해 온 결과 1996년 5월 현재 76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기금은 39개(미조성 4개), 기타기금은 37개에 이른다.

1996년 5월 현재 부처별 기금현황을 보면, 재정경제원 17개, 통상산업부 8개, 노동부 8개, 농림수산부 6개, 문화체육부 5개 등 5개 이상 기금보유 부처가 5개 기관이고 1개 이

## 產業研究

상 기금보유 부처는 21개 기관이다. 1996년의 기금현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 III.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비용의 마련

여기에서는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비용의 마련방안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다.

#### 1. 남북한 통일방안<sup>7)</sup>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4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 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7월 6일 제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행한 개회사 연설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통일백서 1994』는 "...「신한국」의 전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93. 2. 25)에서 시작하여 제26차 태평양경제 협의회 기조연설(5. 24),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설(6. 3), 그리고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7. 6) 등을 통해서 그 기본방향이 구체화되었다."<sup>8)</sup>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방안은 그동안 관련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6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식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은 먼저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서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 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점차 1 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sup>9)</sup>

김영삼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7)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동운, 「한반도 통일: 통일비용 마련」, 『북방경제연구』, 한국북방경제학회, 1994. 4, pp. 63~77.

8) 통일원, 『통일백서 1994』 p. 50.

9) 김영삼 대통령의 제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회사(1993. 7. 6), pp. 3~4.

##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1단계 : 화해와 협력의 「남북연합」 단계

2단계 :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 단계

3단계 :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 수립 단계

김영삼 대통령은 이어서 남과 북이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서기 위한 통일정책의 세가지 기조로서 첫째, 민주적 절차의 존중 둘째, 공존공영의 정신 셋째, 민족복리의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표현된 두번째 기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존공영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서로 가난하게, 부자유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북이 다함께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공존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뜻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sup>10)</sup>

인용된 부분의 내용은 한반도 통일에서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통일방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오고 있는데 1993년 8월 13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행한 「해방 50주년에 국가연합방식의 통일할 수 있다—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연설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연설에서 김대중 이사장은 3단계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미 나는 20여년 전부터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3원칙이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고, 3단계란 제1단계 공화국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계, 제2단계 연방제 단계, 제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이다. 나의 이러한 20여년 간의 주장은 이번 독일의 조급한 흡수통일에 의한 폐단을 볼 때 그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현 단계에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통일이라는 원칙 밑에 제2 단계로 국가연합방식에 의해서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다.”<sup>11)</sup>

10) 김영삼 대통령의 앞에서 인용한 연설문, pp. 6~7.

11) 김대중, 「해방 50주년에 국가연합방식의 통일할 수 있다—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1993. 8. 13), p. 6.

## 產 葉 研 究

이 연설에서 김대중 이사장은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해 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호 공동이익의 바탕 위에 협력을 추진할 것이나, 한편 우리는 북한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경제는 필연적으로 개방과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내의 민주화 경향이 힘차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과 시장경제는 반드시 민주화를 수반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김대중 이사장의 통일방안에 따르면, 제1단계 공화국연합체에 의한 통일단계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이 단계에서 남한은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방안에 관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이사장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남북한 통일은 3단계에 걸쳐 이룩되어야 하고 둘째, 흡수통일은 피하되 1단계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이사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2. 통일비용의 마련방안

그동안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적잖게 발표되었지만 통일비용의 액수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논문들이 제시한 통일비용은 적게는 4백억 달러(약 32조원)에서 많게는 1조3천억 달러(약 1천 56조원)까지 이르고 있다.<sup>13)</sup> 이같은 차이는 통일의 시기 및 방법, 통일비용의 개념,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수준 등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어떻든 통일비용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액수에 이른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그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2) 김대중 이사장의 앞에서 인용한 연설문, p. 7.

13) 매일경제신문, 1992. 11. 14.

##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 (1) 조 세

정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는 일반화되어 있는 방안이다. 실제로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없다면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징세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92년의 약 19.4%에서 1998년에는 23%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서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또는 통일 관련 조세를 교육세와 같이 다른 조세에 붙여 목적세로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자료가 한가지 제시될 수 있다. 한백연구재단은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1993년 5월부터 3개월간 2회에 걸쳐 통일문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세 신설에 관해서 15명은 찬성, 16명은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서<sup>14)</sup>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 신설은 결코 낙관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면, 정치가들 역시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탐탁찮게 생각하는 징세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독일의 경우처럼 징세를 통해서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부터 통일세를 부과하여 이를 적립해가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채권 발행

재정지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은 많은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도 해방 이후 정부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재정지출의 증가에 충당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은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한백연구소의 조사결과도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에 관해서 22명은 찬성, 9명은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 점으로 보아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국공채 발행이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서 일시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마련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통일비용 마련을 대부분 국공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남한 경제는 투자 위축으로 불황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을 것이다.

14) 한백연구재단, 『포럼 21』(1993 가을 제 7집), p. 36.

15) 전계서, pp. 36~37.

## 產 葉 研 究

그러나 정부가 「통일투자법」(또는 「북한투자법」)을 제정하여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공체를 미리 단계적으로 발행하여 통일비용을 적립해 간다면 통일비용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외채도입

통일비용의 마련을 위해서 외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백연구소의 조사결과도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외채도입에 관해서 23명이 찬성, 8명이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sup>16)</sup> 외채도입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외채도입은 통일비용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채도입은 채권국의 허가만 있으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천억달러 정도의 외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외채도입을 통한 통일비용의 마련에는 그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통화발행

통화발행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등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해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 (5) 민간참여와 통일기금 설치

통일비용의 마련은 기금 설치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금의 조성재원은 주로 민간의 출연금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 글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곧 이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IV. 통일비용의 기금화

여기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통일관련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통일비용의 기금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운용방법 등은 통일기금의 설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부록에 삽입하였다.

---

16) 전계서, p. 37.

## 统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 1. 통일관련 기금 : 남북협력기금

현재 통일 관련 기금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표 4>는 남북협력기금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부터 운용되어 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설치목적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에 따라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그 동안의 사업을 보면, 남북한 간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금의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조성이

<표 4> 남북협력기금 개요

(1) 설치근거 법률	법률명 : 남북협력기금법			근거조항 : 제 1 조
(2) 설치년도	1990		(3) 운용개시년도	1991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남북한간 교류협력등에 필요한 기금의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지원</li> <li>• 교역 및 경제분야 자금대출</li> <li>• 경제분야 교류협력 손실보조 등</li> </ul>			
(5) 주무부처	통일원		(6) 관리운용주체	통일원장관
(7) 조성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li> <li>•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li> <li>•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li> <li>• 장기차입금</li> </ul>			
(8) 여유자금 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 매입</li> <li>•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li> <li>• 금융기관 예치</li> <li>• 유가증권 매입</li> </ul>			
(9) 회계방식	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위탁관리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11) 위탁 관리시 관리비지급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94 실지급	'95 실지급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 대출 : %)		270	200
			'94 실지급	'95 실지급
				'96 예상

자료 : 재정경제원, 『'96 基金白書』, 1996. 5, p. 87.

## 産業研究

주요 사업인데(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비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지원 ② 교역 및 경제 분야 자금대출 ③ 경제분야 교류협력 손실보조 등이다.

또 조성재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에 따라 ①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장기차입금 ③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기금의 운용수입금 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를 통한 정부출연과 이자수익 두가지 뿐이다.

여유자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라 ① 국채·공채의 매입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③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동안의 여유자금 운용 실적을 보면, 금융기관예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탁, 기금예탁, 채권매입등으로 나타나 있다.

기금관리방식은 위탁관리방식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를 맡고 있다.

## 2. 통일비용의 기금화 방안 : '통일기금'의 설치

여기에서는 통일비용의 기금화 방안으로서 '통일기금'의 설치를 논의할 것이다.

### (1) 통일비용의 마련과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우리는 III장 2절에서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다섯가지 방안 - ① 조세 ② 채권 발행 ③ 외채도입 ④ 통화발행 ⑤ 민간참여의 기금설치 - 을 논의했는데 이 가운데서 조세, 채권발행, 외채도입, 통화발행을 통해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 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빨리 이루고자 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은 통일을 가능한 한 긴 시간을 들여 이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이사장의 3단계 통일방안도 이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에서 긴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곧 통일비용이 민간의 참여에 의해서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통일이 독일에서처럼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통일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남북협력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지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역사적인 과업인 통일문제를 놓고 민간이 참여하여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란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말하는데, 그것은 저축을 통한 참여가 될 것이다. 만일 1가구가 월 1만원씩 5년간 정기적금을 한다면 이 돈은 5년 후에 약 78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700만 가구가 월 2만원씩 5년간 정기적금을 한다면 5년 후에 이 돈은 약 10조원을 훨씬 넘어 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온 국민이 지금 당장 '통일적금 통장 갖기 운동'을 펴나간다면 5년 후에 우리는 10조원의 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3단계에 걸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시점에 따라서는 우리가 50조원의 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민간이 저축을 하고 정부가 그 재원을 통일비용의 마련으로 연계하는 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통일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조치와 필요에 따라서는 적금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이 수직적·수평적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의 마련 등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통일이 될 때 통일적금이 북한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에 투자하는 정부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데 통일적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재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일기금」 설치가 필요 한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남한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일시에 실업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범죄문제 등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은 한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규제에는 통일 후 북한주민을 한시적으로 북한 땅에 묶어 둘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대안이란 남한이 북한 땅에 투자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마련해 주고 소득증대

## 産業研究

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남한은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투자에는 정부투자, 기업투자, 그리고 민간참여의 투자가 있는데 「통일기금」은 민간 참여의 투자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적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북한 투자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북한주민에게는 경제력의 향상을, 남한주민에게는 투자수익의 보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 '통일기금'의 내용

이제는 '통일기금'이 설치될 경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기금의 성격, 통일기금의 설치 목적 및 사업, 통일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통일기금의 관리, 통일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을 다룰 것이다.

#### 1) 통일기금의 성격

통일기금은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성이 큰 기금이므로 공공기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기금은 주무장관의 자율적·탄력적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되 그 이전에 계획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이므로 기금의 운용은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

#### 2) 통일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

통일기금은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은 통일적금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 재원은 정부의 관리하에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방법이나 투자대상 등은 정부가 북한투자법을 제정한 후 이에 맞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통일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통일기금의 재원은 다른 공공기금의 경우와 같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부담금, 외부차입금, 기금운용수익, 사업수익,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기금은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설치될 기금이므로 민간임의출연금이 재원조성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기금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기금의 재원조성은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 4) 통일기금의 관리

통일기금의 관리는 주무부처인 통일원의 감독 아래 남북협력기금처럼 어느 국책은행(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면 될 것이다.

### 5) 통일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통일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원의 조성에만 역점을 두게 될 것이므로 통일기금의 설치 직후부터는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어 여유자금의 운용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통일기금은 민간의 저축을 통해서 재원이 조성될 것이므로 민간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예를 들면, 채권 수익률 정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북한에 투자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처럼 국공채 매입,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게 되면, 통일기금은 북한투자에 사용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은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통일기금'의 개요

(1) 설치근거 8법률	법률명 : 통일기금법(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2) 설치년도	?	(3) 운용개시년도	?
(4)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적금을 통해 재원조성에 참여함</li> <li>• 조성된 재원은 북한의 경제력 향상 위해 정부의 관리하에 투자됨</li> </ul>		
(5) 주무부처	통일원	(6) 관리운용주체	통일원장관
(7) 조성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li> <li>•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li> <li>•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적금 통해 재원 조성</li> <li>• 장기차입금</li> </ul>	
(8) 여유자금 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 매입</li> <li>• 금융기관 예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li> <li>• 유가증권 매입</li> </ul>	
(9) 회계방식	기업회계		
(10)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	
	위탁관리	기관명 : 어느 국책은행	

## V. 결 론

이 글은 통일을 대비하여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민족적·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통일기금의 설치를 다루고 있다. 통일 관련 기금은 현재 남북협력 기금 하나뿐인데 이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금의 지원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통일 후 북한의 경제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경제력 향상에 소요될 통일비용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통일기금의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정부의 현행 예산제도를 개관한 다음 기금의 성격, 기금의 분류, 기금의 재원조성, 그리고 기금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남북한 통일 방안을 요약한 후 통일비용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이 글의 핵심 부분으로서 현재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통일 관련 기금인 남북협력기금의 내용을 개관한 다음 통일비용의 기금화를 위해서 통일기금의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통일기금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통일비용의 마련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왜 필요한가를 지적한 후 통일기금의 내용을 성격, 설치목적 및 사업, 재원조성 방법, 관리, 여유자금 운용 등의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통일기금의 설치는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통일비용의 마련을 위해서도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통일원, 『통일백서 1994』.

재정경제원, 『96基金白書』, 1996. 5.

\_\_\_\_\_, 『韓國統合財政收支』, 1995.

대한민국정부, 『1995년 정부기금운용계획서』.

김대중, 「해방 50주년에 국가연합방식의 통일할 수 있다—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 1993년 8월 13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행한 연설.

統一基金 설치에 관한 연구

- 김동건, 『現代財政學』, 全訂版, 박영사, 1996.
- 김영삼 대통령의 제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개회사(1993. 7. 6).
- 대한민국정부, 『1995년도 정부기금운용계획서』.
- 박동운,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북방경제연구』 제5호, 한국북방경제학회, 1994. 4, pp.63~77.
- 박종구, 『우리나라 政府基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경제연구원, 1991. 3.
- 이영선,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3. 6.
- 李俊求, 『財政學』, 茶山出版社, 1994.
- 재정경제원, 『'96基金白書』, 1996. 5.
- \_\_\_\_\_, 『韓國統合財政收支』, 1995.
- 한국개발연구원, 『財政統計資料集』, 1996. 3.
- 한국산업연구소, 『최신豫算會計法令集』, 1996. 1.
- 한백연구재단, 『포럼 21』, 1993년 가을 제7집.
- 황의각, 「통일비용과 그의 경제적 효과」, 『北方經濟研究』 제5호, 한국북방경제학회, 1994. 4, pp.79~102.

## ABSTRACT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Funds

Park, Dong Ur  
Professor, Dept. of Economics and Trade

The recent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suggest that South Korea prepare all the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which seems to be near at h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approach to establish the unification fund in relation to the budget system in Korea.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five approaches to raise money for unification, which are taxation, issueing of bonds, borrowing from foreign countries, borrowing from central bank, and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funds.

These five approaches have merits and demerits, respectively. Taxation may evoke the feelings of tax resistance because taxation for unification will impose an additional tax burden. Issueing of bonds has a limit which is difficult to get enough money for unification. Borrowing from foreign countries also has a limit which will impose an additional foreign debt burden. Borrowing from central bank is not an approach to be recommended because it will induce inflation. However,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funds is relatively good approach, compared to other four approaches because it does not have demerits as mentioned above, and it is open to civilian volunteers.

In this paper, I show the method by which the unification fund can be established.